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 자격·결격사유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 자격 정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34호)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9. 9.
3. 회부연월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 자격에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자격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2. (생략)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략) ⑥ (생략)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략)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현행	개정안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u>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5. (생략) ⑦ (생략)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략)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u>경찰</u>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정보원</u>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략) ⑧ (생략)	1. ----- ----- ----- ----- <u>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2.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경찰</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u> ----- 4.·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¹⁾

- 1)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²⁾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2)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한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기관의 조직체계가 개편될 예정임. 아울러, 같은 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제195조를 개정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및 관련 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 검찰을 전제로 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경력을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0. 2.]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6조 삭제 <2026. 8. 4.> [시행일: 2026. 10.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로 보임.

참고로,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자격을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계급체계와 현행 임용 대상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을 고려하여 양자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⁴⁾

다만,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공소청 관련 용어를 체계·자구상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공소청 검사·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청법」은 공소청 외에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별도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도 「공소청법」상 구분된 기관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의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⁵⁾”으로 개정하여 각각 열거하고 있음.⁶⁾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4)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2]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직무분야 임용예정 계급	일반직·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공무원 외 다른 근무 경력자
						대학 (교육대학·전 문대학 포함)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대상자	「공무원보수규 정」 별표 12 대상자	
4급	4급 (상당)	외무 6~8등급	총경	소방정	중령	부교수	24호봉 이상	17호봉 이상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5) 지방법원 지원(支院)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6) 「공소청법」

위원 결격사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 전체에 대응하는 범위를 포괄하고 법률상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공소청 검사·직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직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칙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된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명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제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에 맞게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13조(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검사를 둔다.

제26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참고: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수정의견(안)>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생략) ⑥ (생략)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u> ---- -----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1. 2. (개정안과 같음) 3.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u> ----- ----- ----- 4.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략)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 -----.	----- ----- -----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u>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으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 ----- ----- ----- ----- <u>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 -----	1. (개정안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략)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 -----.	② ----- ----- ----- ----- -----.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u>경찰</u> 의 직에 5	1. ----- --- <u>중대범죄수사청</u>	1.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5. (생략) ⑧ (생략)	<u>수사관·경찰</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u> ----- ----- --- 4.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u>	2. ~ 4.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 ----- -----. 1.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5. (개정안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u> <u>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u>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문의처

02)6788-5349